

일반

##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커먼즈와 불로소득주의 사이에 서 있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Re)making Energy Commons Against Rentierism

홍덕화\*\*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재생 에너지 사업 모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는 탈핵·탈 석탄의 시점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넘어서 에너지원과 에너지 시설의 소유·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전환 경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전환 경로에 함축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먼즈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으로 확장하고 ‘커먼즈의 정치’의 시각에서 통합한다. 더불어 불로소득의 원천 중 하나가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에너지전환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 전원 등을 사례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에 함축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을 통한 불로소득 추출의 문제를 검토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선물’과 ‘공통의 부’를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요어: 커먼즈, 공동자원,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불로소득 자본주의, 정의로운 전환

\* 이 논문은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포럼 생명자유공동체를 통해 수행된 연구이다. 논문 초고에 담긴 고민을 나눠주신 포럼의 연구진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dhhong@cbnu.ac.kr)

## 1. 들어가며

‘햇빛·바람 연금’은 에너지전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판매 수익을 나누는 주민 이익 공유제가 ‘햇빛·바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신안군과 같이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도 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정의운동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24년 3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태안에서 열린 ‘충남노동자행진’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 2024).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 주장하며,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민주적 통제’, ‘부유층과 대기업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투자은행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구준모 외, 2023).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재생에너지’는 주요 정당들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언뜻 보면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재생에너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햇빛·바람 연금은 금액이 적더라도 자본 투자를 이익 향유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공재생에너지는 자본 투자와 무관하게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옹호한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公共)협력에 기초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모색하지만 햇빛·바람 연금은 민간 기업과 민간 자본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재생에너지’ 사이의 긴장은 에너지전환의 방법으로 커먼즈<sup>1)</sup>가 소환되고 있는 동시에 커먼즈에 대한

---

1) 공유지, 공동자원, 공동장 등 커먼즈의 번역어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커먼즈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엇갈린다. 커먼즈론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여기서는 탄소중립·에너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에너지전환 논의에서 커먼즈가 직접적으로 소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구준모 외, 2023; 홍덕화, 2019; 2021). 하지만 주민 이익 공유제, 에너지 협동조합,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 에너지 공유경제, 풍력자원 공유화 등 에너지전환과 커먼즈 사이의 연결고리는 계속 존재했다(김동주, 2017; 리프킨, 2014; 이정필·한재각, 2014; 홍덕화, 2019). 되돌아보면, 에너지 커먼즈를 상상하는 출발점은 주민 이익 공유와 에너지 협동조합, 나아가 에너지 공유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에너지 자치·분권과 지역에너지공사 등에 대한 관심이 결합하여 공동체 에너지로 논의가 확장해 갔다. 하지만 주민 이익 공유제와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공유경제는 전력산업의 사유화·시장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우회했다. 그리고 공동체 에너지가 시장 주도 에너지 전환의 보조 수단처럼 활용되는 일이 늘면서 에너지 커먼즈를 공동체 에너지로 치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한재각, 2023; 홍덕화, 2019).

에너지 커먼즈를 공공협력(public commons partnership)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였다(구준모 외, 2023; 홍덕화, 2021). 자치·협력 추구하고 생계 자립의 권리를 커먼즈의 구성 원리로 결합시킨 ‘커먼즈의 정치’(정영신, 2020)는 공공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국유화·공기업과 시장화·사기업의 대결 구도 속에서 공동체 에너지, 지역 에너지가 시장 주도 에너지전환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커먼즈가 소환된 것이다.

---

전환의 경로를 재조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커먼즈 논의를 선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커먼즈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고려해 특정 번역어를 사용하는 대신 ‘커먼즈’로 표기한다. 다만 기존 논의를 감안하여 맥락에 따라 공동자원, 우리 모두의 것, 공통적인 것 등의 번역어를 병용할 것이다. 권범철(2019), 장훈교(2022), 정영신(2016, 2020), 박서현(2023), 윤영광(2022a, 2022b), 최현(2024), 한디디(2024) 등이 여러 갈래의 커먼즈 논의를 개괄하는 데 유용하고, 박서현(2022), 윤영일·최현(2023)은 국내 커먼즈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협력이 에너지 커먼즈 논의의 중착점은 아니었다. 단적으로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공풍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동주(2015; 2017)는 바람의 ‘무상 이용’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하며 풍력자원 공유화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 분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풍력자원 공유화와 주민 이익 공유제, 공동체 에너지, 공공협력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한재각, 2023; 홍덕화, 2019; 2021).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이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에너지전환 경로를 놓고 기후·에너지운동이 분화되기 시작한 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추진 방법을 둘러싼 논쟁 곳곳에서 커먼즈와 연관된 문제를 엿볼 수 있다. 한 예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진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한 이후 느슨하게 규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 공동의 자원인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 배당(또는 기본소득)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대안으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스탠딩, 2021).

한편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면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전력 수요까지 능동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시민들이 생산·소비자로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의 분산화,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활성화를 에너지 민주주의로 치환하는 이들은 여기서 에너지 공유경제의 미래를 본다(리프킨, 2014; 이호근, 2023). 하지만 플랫폼 사업 모델이 확산하듯이, 분산 전원의 장밋빛 전망은 전력·에너지 플랫폼 기업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더불어 이윤 창출의 새로운 통로를 만들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커먼즈는 햇빛·바람 연금과 공공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분산 전원

과 전력 플랫폼을 관통하는 열쇠 말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커먼즈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확장하는 동시에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갈래의 커먼즈 논의 속에서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면서 이를 관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발점은 커먼즈의 유지·지속을 넘어서 쟁투적 과정으로서 커먼즈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이다(정영신, 2019: 382). 아울러 커먼즈의 변동을 촉발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발 더 내디딜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의 도입·시행이 다른 정치경제적 변화와 연결되는 양상을 따져볼 때, 에너지 커먼즈로 다양한 분야의 쟁점을 관통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커먼즈의 강탈·포획을 매개로 한 불로소득 추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전환 경로를 둘러싼 쟁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공동체 에너지, 공공협력에서 커먼즈의 강탈·포획으로 확장하고 ‘커먼즈의 정치’의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다음으로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커먼즈의 관계를 개괄한 뒤,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이 불로소득 추출의 계기로 편입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확산하면서 역설적으로 지대(rent)와 불로소득의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커먼즈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ayer, 2023). 이는 불로소득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전환 경로 경합의 역사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커먼즈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4절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가스 산업 구조개편 등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정책들이 커먼즈의 강탈·포획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커먼즈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가시화된 현안, 그 자체로 쟁점화된 사안이지만 그동안 에너지 커먼즈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안, 마지막으로 커먼즈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잠정적 쟁점 사안으로 구분해서 커먼즈와 불로소득주의의 경합을 살펴본다. 커먼즈의 시각에서 불로

소득의 문제를 파헤칠 때, 시장 주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과 에너지전환 경로를 둘러싼 쟁투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 2. 다시 (에너지) 커먼즈란 무엇인가

에너지 커먼즈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전환 경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를 듯싶다. 이를 부정하지 않되,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관통하는 쟁점을 좇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되짚어 보자.

에너지 커먼즈는 자원과 공동체, 사회적 규약의 결합으로 볼 때 그 실체가 가장 뚜렷하게 다가온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주도 아래 아파트의 관리 외 수익을 활용하여 대다수의 가구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에너지 커먼즈의 사례로 꼽는 것이 단적인 예다(황진태, 2022).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주민 조직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익을 나누는 사례를 에너지 커먼즈로 접근하는 것 또한 낯설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 커먼즈를 공동체를 중심으로 특정한 규약에 기초하여 자원을 이용·관리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재공영화(remunicipalization)가 에너지 커먼즈 논의와 결합하는 것을 담아내기 쉽지 않다. 에너지 커먼즈 논의에서 전력산업의 사유화·시장화에 대한 비판이 약해지면서 에너지 커먼즈가 에너지 프로슈머의 공동체로 축소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커먼즈를 매개로 관료적인 공공기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역시 자원과 공동체, 사회적 규약의 결합으로는 포착하기 힘들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은 ‘커먼즈의 정치’를 통해 공공협력을 사고하는 것이다. 커먼즈의 역사 연구나 이탈리아 도시 커먼즈 운동이 보여주듯이, 커먼즈에 함축된 생계 자급의 권리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소유·이용·관리하는 자원과 커먼즈를 동일시할 수 없게 만든다(라인보우, 2012; 정영신, 2022). 또한

기본권적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국가에 의해 “생계 밀착”(최현, 2024)인 커먼즈가 파괴되는 일이 잦았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커먼즈의 정치’는 이 지점에 주목하여 커먼즈가 ‘우리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모두의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긴장이 커먼즈의 생성적 힘의 원천이라 말한다(정영신, 2020; 홍덕화, 2022). 이제 커먼즈는 자치·협력의 원리에 기초해 재화와 서비스의 공동 생산을 모색하면서 공적 영역을 재구성하는 기획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재)해석을 통해 에너지 커먼즈는 시장 주도 에너지전환을 비판하되 전력공기업의 개발주의적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 기후·에너지운동의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협력은 공동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부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추구하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동체 에너지와 발전공기업, 지역에너지공사 등의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에너지전환 경로를 모색하는 통로가 되었다.<sup>2)</sup>

공공협력은 발전공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협력 논의는 발전시설의 소유·운영으로 초점이 좁혀졌다. 그 결과, 시장화·상품화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 모두의 것’이 부상하는 현상은 흐릿한 배경처럼 남겨졌다. 또한 제주 공평화 운동의 선구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은 에너지 커먼즈 논의 속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졌다. 커먼즈의 정치에 자본과 커먼즈

---

2) 이와 같은 해석은 국내 연구의 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2010년대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아래 공유경제, (마을)공동체활동 등이 확산하는 것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박서현, 2022; 윤여일·최현, 2023).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비판과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증척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관리, 조직화와 더불어 공동체와 공공 부문의 관계가 커먼즈 연구의 중요한 쟁점을 형성했다. 박서현(2022)이 지적하듯이, 2010년대 사회운동적 지향을 가진 한국의 커먼즈 연구들은 공(common)으로 공(public)을 구현하는 것, 다시 말해 공동자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것을 모색했다.

의 대립 문제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커먼즈의 강탈은 공공협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한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구적 공동자원의 사유화라 비판하며 탄소세 연계 기본소득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탄소세 자체에 대한 시각 차이와 맞물려 공동체 에너지나 공공협력 논의와는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다. 가상발전소와 같이 기술혁신을 매개로 한 생산-소비의 재조직화를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재전유하려는 시도 역시 진전이 없었다.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확장하려면 이와 같은 간극부터 좁힐 필요가 있다.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은 공동체나 공기업과 같은 조직을 매개로 한 시설의 소유-운영과 이익 배분을 에너지 커먼즈의 중심으로 끌고온다. 반면 공영화와 탄소세 연계 시민배당은 명시적이든 잠정적이든 자연 자원의 배타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지점에서 커먼즈 논의는 종종 로마법의 공동물(Res communes)을 소환하고 공공신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박태현·이병천, 2016; 장훈교, 2022). 로마법에서 공동물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대기, 바다, 해변 등 모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커먼즈 운동은 모두에게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또는 사적 소유로 전환할 수 없는 영역을 지키고자 할 때, 공동물 개념을 자주 활용했다(장훈교, 2022: 58~59).<sup>3)</sup> 공동자원에서 유래하는 부를 시민배당의 형태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석유, 천연가스, 공기, 바람, 물, 숲 등은 공동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공적 개발을 우선하고 상업적으로 개발·이용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떠올려 보라(스텐딩,

---

3) 자본은 무주물(Res nullius)의 시선에서 ‘자연의 선물’을 바라본다. 무주물적 접근은 무주물이 인간의 노동과 결합하면 사적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사적 소유와 대립하지 않는다(장훈교, 2022: 58~59). 이로 인해 무주물은 자연의 영역이 자본 축적의 대상으로 편입될 때 사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2021; 최현, 2024). 이에 비춰 보면,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는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반면 이익 공유를 자본 투자와 분리하는 방식은 이익 공유를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처럼 시민배당을 공동자원에 대한 이익 향유의 권리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커먼즈가 생계 자급의 권리를 보장했던 것에서 유래한다(스탠딩, 2021; 최현, 2024). 그리고 이는 공동자원을 규정하는 힘이 자원의 생물리적 속성이 아닌 윤리적·정치적 정당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커먼즈는 자연적이든 사회적이든 공통의 부에 대한 접근은 평등해야 하고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다는 인식을 윤리적 토대로 하고 있다(장훈교, 2022: 478~47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현(2019: 56~60)은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폭넓게 인정받을 때 커먼즈가 실제화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생존, 생계 자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② 해당 자원을 형성하는 데 특정 개인·집단이 이바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지면서 이용에 참여하려는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존재할 때, 독점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커먼즈로의 전환 요구가 커진다.

커먼즈를 생계 자급의 권리, 배타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에 대한 저항과 연결해서 이해할 경우, 커먼즈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새로운 종획(new enclosure)을 배경으로 커먼즈 논의가 확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토지, 숲 등 생계 활동과 연계된 자연 자원에 대한 종획과 공공 부문의 사유화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뒤바꾼 새로운 종획은 커먼즈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생계수단의 상품화에 저항한 사회운동은 종획에 함축된 재산권의 재편을 문제 삼으며 커먼즈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앞장섰다(장훈교, 2022; 정영신, 2016). 세계 곳곳에서 공공서비스와 생계 기반을 되찾기 위한 저항이 펼쳐졌고, 먹거리, 주택, 물,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인 공급-소비의 기반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De Angelis, 2017; Federici, 2019). 이와 같은 움직임이 특정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 관리권을 재편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종횡의 시각은 잃어버린 것으로서 커먼즈를 되찾는 실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커먼즈가 새롭게 생성되는 양상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Dardot and Laval, 2019; 장훈교, 2022; 정영신, 2020). 그래서 기술혁신과 생산-소비의 재조직화가 촉발하고 있는 변화를 커먼즈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생산과 자본에 의한 포획을 커먼즈론의 중심으로 끌고오는 공통주의다(네그리-하트, 2014; 박서현, 2023; 윤영광, 2022a, 2022b). 사회 공장(social factory), 사회적 생산의 장으로서 메트로폴리스 논의가 시사하듯이, 자본 축적은 공통적인 것의 추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 낸 데이터를 추출·가공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라. 일상생활과 노동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에서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들을 포획하는 것이 자본 축적의 프런티어로 부상했다. 불특정 다수의 활동의 산물에 대해 특정 기업이 배타적 소유권·이용권을 확립하여 이익을 전유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새로운 종횡과 공통주의가 시사하는 바, 자본 축적은 자본이 직접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들에 의존하며 그 중심에 커먼즈가 있다. 이때 자본과 커먼즈의 관계는 이중적인데, 자본은 커먼즈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강탈·포획하고, 나아가 저항에 맞서 대응책을 강구한다(De Angelis, 2017; De Angelis and Harvie, 2014; 권범철, 2019). 달리 말하면, 자본 축적을 위해 자본은 사회생태적 재생산의 조건과 집합적(재)생산 활동을 축적의 순환 속으로 끌어들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포획하지는 못한다. 이 지점에서 커먼즈와 자본 축적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만큼 자본과 다른 가치 실천 또는 탈상품화된 방식으로 삶을 조직하는 것과 커먼즈 사이의 접점은 넓어진다.

출발점이 다른 만큼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 공공신탁·시민배당, 새로운

종획과 공통주의가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 속에서 커먼즈가 소환되거나 활용되는 방안을 떠올려 보면, 이들을 관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커먼즈의 정치’를 공공협력 너머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 커먼즈는 에너지 관련 자원을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 (재)배치하려는 활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영신(2019: 399~400)이 강조하듯이, 커먼즈는 대안적인 가치 실천이 서로 충돌하는 사회적 장으로서, “커머닝에 의해 결정되는 물질의 사회적 형태”이다. 달리 말하면, 커먼즈는 자원-공동체-규약이라는 핵심 요소의 결합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존재론적 차원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제도적 배치를 둘러싼 쟁투를 세밀하게 추적하기 어렵다. 커머닝의 과정에서 재편되는 것은 단순히 자원(의 재산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커먼즈의 형성과 활성화, 강탈과 포획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에너지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 속에서 커먼즈는 특정한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데 저항하면서 이를 공(共, common, 우리의 것)과 공(公, public, 모두의 것)의 관계 속에 (재)배치하는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 ‘커먼즈의 정치’에 함축된 문제의식을 되새겨 보면, 커먼즈의 정치는 공공협력으로 국한되지 않고 강탈과 포획의 과정 속에서 커먼즈에 대한 감각이 형성되고 커먼즈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실천이 일어나는 것을 포괄한다. 따라서 커먼즈의 정치는 특정한 자원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요구하고 향유하는 활동, 그리고 이를 소유·이용·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공공협력, 나아가 생산·소비의 재조직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공통의 부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둘러싼 쟁투를 하나의 연결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3.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 1) 불로소득의 원천으로서 커먼즈

부동산, 금융 등 비생산적 부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인 지대를 현재적 쟁점으로 재조명한 논의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불로소득 자본주의이다.<sup>4)</sup>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은 불로소득의 범위를 넓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스(Christophers, 2020)는 희소자원의 소유·통제에 초점을 맞춘 비주류 경제학의 시각과 경쟁의 제한·부재의 측면에서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관점을 결합한다. 그 결과, 불로소득은 경쟁이 제한되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보유 또는 통제를 통해 얻는 초과 수익의 문제로 확장된다. 한발 더 나아가 지주형(2022)은 사회적 권력관계를 매개로 한 소득의 이전까지 불로소득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권력관계를 통해 창출된 생산 부문의 초과 이윤, 특혜에 가까운 국가 보조금, 세금 감면·세액 공제와 같은 조치까지 불로소득의 시야에 들어온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범위 역시 금융자산, 토지·건물, 자연 자원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의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외주화 계약으로 확장된다.

불로소득의 원천이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융화와 플랫폼 경제이다. 우선 신자유주의화를 거치며 상품 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보다 금융적 수익 추구를 우선하는 영역이 증가했다.<sup>5)</sup> 특히 실물자산의 증권화와 금융

---

4)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은 지주형(2022)을 참고.  
 5)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생산적·경쟁적·혁신적 측면과 비생산적·독점적·비효율적 측면, 또는 혁신·기업가주의와 불로소득·자산 기반 소유주의의 공존과 경합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지주형, 2022; 이병천, 2022). 역사적 국면으로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불로소득·자산 기반 소유주의가 우세한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금융, 부동산 등 지대 추구 부문의 동맹 형성과 영향력 확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시장의 팽창은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해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지주형, 2022). 또한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토지와 자본, 지대와 소득, 생산적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한편 플랫폼이 사회경제적 순환을 조직하는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플랫폼은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Langley and Leyshon, 2017; 김명수, 2023; 서르닉, 2020).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만큼 이용자의 가입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 간 경쟁은 피할 수 없다. 특히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 플랫폼 간 출혈 경쟁과 인수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지위가 공고해질수록 중개 수수료, 구독료, 데이터 추출·분석을 통한 광고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플랫폼 기업의 지위가 불안정적일 경우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sup>6)</sup> 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 모델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단순히 생산적 혁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는 것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준다(Langley and Leyshon, 2017; Sadowski, 2020; 김명수, 2023). 플랫폼 경제에서 생산적 투자 및 기술혁신의 대가와 지대 추출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진다.

이쯤에서 플랫폼 경제는 탈물질화가 아닌 물질적 추출의 재조직화를 동반한다는 점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이용 정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감지 기술을 토대로 신체 활동이나 물류(logistic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지 수집·추출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

6) 플랫폼 경제는 금융 자본의 순환 및 수익 창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은 벤처 자본의 유치를 통해 진행되고, 지배적 지위에 오른 플랫폼 기업은 주식 상장 등의 방식으로 투자 자본을 회수한다(Langley and Leyshon, 2017; 김명수, 2023).

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프래킹(fracking), 희소광물 추출, 생명 정보 추출 등 채굴주의(extractivism)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함께 봐야 한다(Mezzadra and Neilson, 2017).

커먼즈의 시선에서 보면, 자연 자원, 이용자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은 커먼즈의 강탈·포획을 거쳐 불로소득의 원천인 자산으로 변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자연의 선물처럼 주어진 공동자원, 집합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공통의 부를 자산화한 뒤,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을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이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Karakilic, 2022). 자본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 또는 집합적인 활동의 산물을 자산으로 변환함으로써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번성한다.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불로소득 창출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제도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한다(Christophers, 2020; 이병천, 2022). 우선 민영화, 자유화, 규제완화는 자산 풀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반독점 정책이 무력화되고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자산 가격을 높이고 안정화하는 조세·재정·통화 정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자연 자원의 경우, 채굴권과 판매권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 개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공공 인프라로 시야를 좁히면, 수익성 있는 부문은 자주 헐값에 매각되었고, 민영화 이후 입찰 경쟁이 제한적으로 일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때가 많았다(마추카토, 2020: 414~418).

반대로 커먼즈의 유지·보호·생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정책과 맞닿아 있다. 한 예로, 크리스토퍼스(Christophers, 2020)는 독점 규제(경쟁 강화 정책, 지적재산권 재편, 금융·플랫폼 규제 강화), 조세 제도 개편(특혜적 조치 축소), 산업정책 강화(필수 인프라의 공공 소유, 소유 제도 재편(공동체 토지신탁, 공동체 구입 우선권 제도 등 공공 소유 확대) 등을 불로소득 축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생산적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이병천, 2022; 지주형, 2022). 다만 현재 국면에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정책이 커먼즈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 2) 불로소득 창출의 기회로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중흥 논의는 전력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사유화와 민간위탁을 커먼즈의 강탈로 접근했다. 그리고 재공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와의 협력 속에서 공공 부문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했다.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에너지전환에서 커먼즈는 한층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바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력 발전이 풍력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 이익 향유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Hughes, 2021; Wade and Ellis, 2022; 김동주, 2017; 최현, 2024). 사기업이 해상풍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온전히 사기업의 기여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는지 묻는 이들은 앞으로 더 늘 것이다. 커먼즈의 시선에서 보면, 특정 집단이 바람이 만들어지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없는 만큼 바람은 배타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람의 소유·이용 권리의 재편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뉴질랜드와 멕시코의 선주민들이 바람을 집합적 소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국 헤이룽장성이 풍력과 태양력의 국가 자산화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Hughes, 2021).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할수록 '자연의 선물'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며 이익 독점의 정당성을 놓고 다투는 일은 더 잦아질 것이다.

시선을 잠시 과거로 돌리면, 역사적으로 자연 자원은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

되어 사적 소유에서 제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전종익, 2020). 그리고 공동자원으로 부터 얻은 이익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만큼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왔다. 연장선에서 자연 자원은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적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적 개발이 아닌 특허를 통해 사업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도 사업권 경매, 초과 이윤세 부과 등의 형태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화석연료, 광물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아울러 적용되었고, 생태계 서비스 이용이나 오염물질의 배출·흡수, 나아가 재생에너지로 확대될 수 있다.<sup>7)</sup>

잘 알려진 대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가장 논쟁적인 감축 수단 중 하나이다. 제도 시행상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동자원을 오염시키는 권리를 오염자에게 부여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거나 탄소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중 탄소세에 관한 논의는 탄소세가 공동자원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하여 탄소세를 시민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과 자주 연결되고 있다(스탠딩, 2021). 펠리(Felli, 2014)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대 추출의 문제로 끌고간다.<sup>8)</sup> 펠리에 따르면, 기존의 논의들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 초점을

---

7) 자연력의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해도 소규모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시골 물레방아, 풍차 등)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경향이 있다. 특허나 무상 이용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였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풀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와 분리 범위나 개인적 이용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토지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자원이지만 광범위하게 사유화된 만큼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권과 풍력 자원의 소유권·사용권을 분리하는 것부터 장벽에 부딪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 자원과 토지의 관계가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화석연료, 수력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농업과 임업의 산물(바이오매스 포함)은 대부분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현재 태양력과 풍력은 수력과 바이오매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항은 전종익(2020)을 참고.

맞춘 나머지 '배출권'이 창출·배분되는 것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비판적 논의는 공적 재산권으로서 배출권이 국가에 의해 창출되어 국가 간/내에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배출권은 사실상 한정된 자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다른 자본이 생산조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배출권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생산을 제약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는 배출에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상적 자산과 인위적인 권리를 창출하여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산된 가치의 배분을 놓고 다투는 문제에 가깝다. 또한 탄소 배출권을 설정·할당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과 대상에게 특혜적인 지원이 뒤따르는 일이 많다. 단적으로 배출권의 무상 할당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배출권 할당만으로 이익을 거두는 일이 일어났다. 배출권의 유상 할당이 늘고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상쇄 조치 조치를 취하거나 제도적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여전히 빈번하다. 따라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오염 행위에 가격에 매겨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탄소 배출권의 설정·할당·거래는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이들에게 지대를 추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로소득의 범위는 지배적 지위와 사회적 권력을 활용해

- 
- 8) '자연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 of nature)는 상품화, 사유화, 금융화를 통해 자연이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최병두, 2009; 홍덕화, 2017). 탄소 배출권 거래제, 습지·서식지·생물다양성 거래시장 등 자연이 추상화되어 거래 시장이 창출되는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다만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의 원천을 깨닫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지대에 주목하는 이들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지대에 관한 개괄적인 논의는 비거·덤프시(Bigger and Dempsey, 2018)와 같은 호에 실린 논평을 참고할 것.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같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국면에 따른 생태위기의 전개 양상의 차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변화에 주목한다.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물질순환의 팽창과 균열, 상품화로 인한 생태적 리듬의 파괴, 환경오염의 심화와 피해의 전가 등이 장기 지속적인 현상이라면 자연의 (금융) 자산화, (환경규제를 동반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불로소득 추출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당면한 생태위기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장기적 경향성과 제도적 배치에 따른 국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희소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초과 수익과 제도적 특혜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에 수반된 제도적 지원의 성격을 따져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크리스토퍼스(Christophers, 2024)가 비판하듯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가격 하락과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시장 주도 에너지전환은 가격이 아닌 수익성(profitability)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가격 변동성 완화, 수익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기되는 실질적인 쟁점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 자체가 아닌 지원의 원칙과 방향이다. 연장선에서 녹색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 역시 눈여겨볼 지점이다. 마추카토(2020: 318)는 혁신의 누적적·집합적 성격을 강조하며 혁신적 기업이 누리는 초과 이윤은 초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공공 투자에 기초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의 연구개발이 공적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지적재산권 제도와 혁신의 이름 아래 소수의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 특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추카토(2020)는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를 구분하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누가 무엇에 대해 어느 정도의 몫을 가져야 하는지, 나아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라 말한다. 혁신의 속도만큼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고,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를 구분할 때 혁신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혁신 지원과 민간 투자의 위험 제거, 불로소득 추구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전환을 위한 공적 투자나 보조금 지원이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분산 전원의 증가와 전력중개사업, P2P 전력거래의 확대와 같은 변화 속에서 커먼즈와 불로소득 추출이 부딪치는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협력적 공유사회와 분산형 스마트 전력 인프라에 대한 리프킨(2014:

2020)의 논의는 상당히 시사적이다. 리프킨은 분산 전원의 확산을 대중의 손에 전력과 권력을 넘겨주는 것으로 추켜세운다. 그는 전기 소비자가 분산형 스마트 전력 인프라에서 생산자로 통합되는 것을 넘어 전력망 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생산-소비가 최적화될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소비자의 능동적인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진다. 물론 리프킨이 독점적 기업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리프킨은 전력회사가 전력망과 전력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에너지 협동조합이 분산 전원과 스마트 전력 인프라 시대를 이끌 것이라 말한다. 공동체 에너지가 시장 주도 에너지 전환과의 관계를 우회하듯이, 이 지점에서 리프킨은 전력망 관리자로서 소규모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기여가 누구에 의해 전유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를 추적하기보다 낙관적 전망으로 대체한다. 전력 소비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 비용을 줄이도록 돕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으로 간주되고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얻는 이익은 전력회사와 고객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리프킨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통합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sup>9)</sup> 앞서 언급했듯이, 플랫폼은 유류 자산이 될 수 있는 분산형 자원을 생산적 자산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과 송배전, 전력 소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의 효용성이 커진다. 소규모 분산형 자원의 전력망 접속이 확대될수록 전력망 안정화

---

9) 형성 중인 전력-에너지 플랫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옥토퍼스 에너지만한 곳이 없을 듯하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옥토퍼스의 자회사로 출발한 옥토퍼스 에너지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업체 중 하나이다. 옥토퍼스 에너지의 성공 비결은 데이터 및 머신러닝 플랫폼 '크라켄(Kraken)'인데, 크라켄의 핵심 기능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변동 요금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근 옥토퍼스 에너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해상풍력 투자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송준호(2024)를 참고.

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sup>10)</sup> 동시에 플랫폼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기여와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전력 플랫폼은 플랫폼의 기본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산과 집중이 통합된 플랫폼의 이중성(Sadowski, 2020)은 전력 플랫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으로서의 전력망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이중성이다.

#### 4.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 다시 보기

##### 1) 투자 참여형 이익 공유와 공공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 공유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문턱을 낮추더라도 자본 투자를 전제로 하거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혜적 조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재각, 2023). 최근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신안

---

10) 현재 소규모 분산형 자원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은 전기요금 상계거래(단순 전기요금 절감, 상계 후 판매 수익 정산 등), 분산 자원의 중개(도매시장 거래 대행과 판매 수익 배분), P2P 전력거래 플랫폼(수수료, 이용료)이다(김현제, 2019; 이호근, 2023). 이와 같은 수익 모델에서는 전력 수요의 시간대 이전과 같이 자가 소비량을 조절하면서 전력거래시장의 변동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미터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 패턴을 분석한 뒤, 발전 비용, 시간대별 요금 정보와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자주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현제, 2019; 이호근, 2023).

군의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투자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따르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도록 지원한 뒤 참여한 주민들에게 발전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우양호, 2023).<sup>11)</sup>

반면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바람을 공동자원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은 민간기업들이 바람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설치를 요구했다(김동주, 2015; 2017).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의 요구가 제도화되면서 민간 사업자는 당기 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를 공유화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이 이익 공유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제도의 기본 원리는 투자 참여형 이익 공유와 다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공유되는 이익은 투자 수익, 토지 임대료, 자발적 이익 공유, 재생에너지 독점적 이용에 대한 대가까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sup>12)</sup> 이를 고려해 <표 1>과 같이 이익 공유 모델을 투자 모델(채권펀드, 지분·직접 사업), 비투자 모델(부지임대, 현물편의), 보편 이익 공유로 구분할 수 있다(한재각, 2023: 24). 이에 비춰 보면,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의 특징이 분명해지는데, 풍력자원 공유화는 자본 투자 여부와 무관하게 '바람'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함

11) 신안군은 폐염전 부지, 농지, 양식장 등을 활용하여 주민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 참여 권리는 거리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고, 연령, 전입신고 시점과 같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신안군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분기당 1인 10~60만 원 배당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협동조합 가입률은 75~93% 수준이다. 관련 사항은 우양호(2023: 180~182)를 참고. 신안군 사례들의 세부적인 차이는 이강욱(2023)을 참고할 것.

12) 여기에 피해 보상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복잡하다. 권정임(2018)이 지적하듯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태양광·바람 등 재생에너지 자원, 발전·송배전 시설이 들어서는 토지, 시설 건설로 인한 자연적·사회적 피해와 관련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 중 바람과 태양, 땅은 선물처럼 받은 것으로 파생되는 이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다. 반면 소음, 반사광, 경관 훼손 등 사회환경적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므로 환경권 침해의 측면에서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소유 단위, 사용료, 피해 보상 기준·범위 등은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Hughes, 2021).

〈표 1〉 국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와 주민 참여 유형

구분		사례	개요
투자형 인근 지역 이익 공유	간접 참여 (소유권 없음)	채권형	신안 안좌도 태양광 주민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총사업비의 4%인 113억원의 채권을 매입(사업자 보증을 통한 대출).
		채권형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사업자가 총사업비의 4%인 160억원의 채권 발행, 5개 주민법인이 매입(사업자가 대출).
	직접 참여 (소유권 있음)	펀드형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주민참여 펀드로 17억원 조달. 태백시민 256명 참여, 1인당 평균 600만원 투자.
		지분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원) 투자. 300가구 이상이 100~500만원 투자.
비투자형 인근 지역 이익 공유	직접 참여 (소유권 있음)	직접 사업형	제주 행원리, 월정리 풍력 마을회가 사업자가 되어 지분 출자, 나머지 사업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전력 판매 수익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
	부지 임대형	제주 가시리 풍력·태양광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 사업자는 마을목장회에 임대료 지급.	
보편 이익 공유	현물 편익형	영광 풍력 사업자의 이익공유금과 발주법 지원금을 이용, 주민 태양광발전소 설립.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풍력을 공동자원으로 규정, 사업자가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 공유화 기금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용.		

자료: 한재각(2023: 24)을 축약

께 향유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다른 재생에너지에는 적용될 수 없을까? 전종익(2020)에 따르면, 헌법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재생에너지에 적용된다. 자연 자원을 공동체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지향해 왔음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역시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소유·이용·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헌법 제120조 제1항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운동, 공공재생에너지운동에서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김동주, 2017; 한재각, 2023).

이처럼 자연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공 주도 개발의 문제가 뒤

따라온다. 전종익(2020: 74, 83)은 자연 자원을 공동체 전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국영 또는 공영으로 개발·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굴·개발·이용을 위한 기회와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국공유화 모델이 더 적절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은 민간 자본 투자보다 공공 자금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을 이끌어 낸 바 있다(김동주, 2017: 127~128). 공공재생에너지운동 또한 민간 자본의 초과 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공유화 모델을 제시한다(구준모 외, 2023; 한재각, 2023).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휴즈(Hughes, 2021)는 다층적인 공적 소유에 기초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은 자연력의 독점적 이용 억제, 공공 재정 투자와 공공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충 등을 바람직한 전환 모델로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당히 더디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력의 독점적 이용을 비판하고 공공 주도 전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들은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한재각, 2023).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사업 모델은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민간 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23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77개 해상풍력사업 중 70개 사업이 해외 자본과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한재각, 2024). 나아가 현재 상황에 비추 보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대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발전단가가 낮은 재생에너지를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해외 자본과 대기업은 풍력 자원을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sup>13)</sup>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발전에서 유래하는 이익을 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생 에너지의 소유권과 사업 모델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공동자원으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의 요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초과 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재생에너지의 공동자원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모델로서 공공협력은 커먼즈를 대안적인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상상하는 매개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다.

## 2)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한 뒤 이를 (무상) 할당하고 느슨하게 규제하여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제1~2차 계획 기간(2015-2020)의 평균 배출권 가격을 적용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인 450여 개 기업이 2015~2021년 사이 배출권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5,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규남, 2022).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은 2,620만 톤의 배출권을 남긴 것으로 보이며 배출권 판매 수익은 대부분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시멘트 산업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

13)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PPA 단가가 높은 편이라 PPA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RE100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PPA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SK E&S 등 대기업 계열사가 주도하는 PPA 계약 체결이 늘고 있다. 이처럼 PPA가 확대될 경우, 좋은 입지를 선점한 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춘 재생에너지를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최근 쟁점은 PPA 요금제인데, PPA 기본 요금과 경부하 요금이 일반 산업용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최호·변상근, 2023). 특히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의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지만 제도적 특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대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해당 기업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익이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배출 허용 총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을 무상 할당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포스코는 제1~2차 기간 중 2018년을 제외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권경락 외, 2022).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으로 할당되어 실질적인 감축 압력이 없었다.<sup>14)</sup>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제3차 계획기간에는 잉여 배출권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권경락 외, 2023).

한편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발전공기업의 매각은 번번이 좌초되었다. 표면적으로 공기업 매각과 같은 종횡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민간 대기업이 발전산업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민간 발전사의 LNG 직수입이 늘면서 공기업 중심의 전력·가스 산업에 균열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 LNG 발전사에게는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제도를 활용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로 인해 에너지(수입) 가격이 급등할 때 민간 LNG 발전사의 초과 이익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공공 인프라의 매각이나 민간 위탁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한 예로, 2022년 SK, GS 계열의 LNG 발전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발전공기업이 적자를 본 것과 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까닭은 무엇보다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발전공기업과 달리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급등할 때 민간 발전사들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용, 2023).

또한 LNG 직수입은 민자 발전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혜택과 공백을 넓혀주었다. 평상시 민자 LNG 발전사는 직도입한 LNG로 연료비 부

---

14) 배출 허용 총량이 높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2016~2017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재산정하여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도 했다(김규남, 2022).

담을 줄여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LNG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민간 LNG 발전사는 비축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수입을 포기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연료를 구매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구준모, 2023). 비축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 부담을 줄인 것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기·가스 소매 요금 사이의 격차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떠안았는데, 해당 기관의 적자가 커지면서 민간 발전사업자의 초과 이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SMP 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민자 LNG 발전사들은 발전기 가동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SMP 상한제를 회피하며 수익의 극대화를 모색했다(구준모, 2023; 김철, 2023). 예컨대, 20MW 이상의 발전시설은 급전 지시를 받는데, 비축 의무가 없는 민자 LNG 발전사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발전소의 가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급전 지시를 회피했다.<sup>15)</sup>

한국에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전면적인 사유화의 길을 밟지 않았다. 하지만 발전산업에 진출한 민간 LNG 발전사에게는 연료 도입, 전력 판매 등에서 발전공기업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역시 배출 허용 총량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여 규제 대상인 기업들에게 오히려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전환 정책에 연루된 불로소득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sup>16)</sup>

---

15) 2024년 1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LNG 발전사는 비축 의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LNG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국내 재판매)가 공식화되었다. 제3자 판매는 2013년과 2016년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는데, ‘민간 LNG 직수입 확대’, ‘LNG 직수입자 간 국내 재판매 허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추진되었다(김진철, 2024).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안보 위기 시 판매가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에 대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6) 세이어(Sayer, 2023)는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녹색 혁신과 생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녹색 혁신을 위한 투자나 그린뉴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자 패턴부터 바뀌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투

### 3) 분산 전원과 전력 플랫폼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면서 송배전망 구축과 함께 전력 계통 운영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산 전원의 증가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만큼 수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 분산 전원의 증가와 전력중개사업, P2P 전력거래의 확대와 같은 변화를 예측하며 ‘공유 경제’에 기초한 에너지전환을 탐색하는 모습도 낫설지 않다 (김현제, 2019).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 ‘신산업육성’은 산업계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느리고, 전기요금제 및 전력거래제도 개편, 전력 판매 시장 개방 등 ‘신산업육성’의 조건이 단기간 내에 갖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전력 계통이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예고된 미래다. 민간 자본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소규모 분산 자원의 증가는 전기의 생산, 판매, 소비의 재조직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이상엽 외(2020)는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이 대단히 갈등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단위 전력 시장부터 개편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결합할 때 신산업육성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일종의 타협책으로 이들은 한전의 판매 부문을 유지하되,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활성화, 전력계량 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활용 신사업 모델 개발, 전기차 충전과의 연계 등 지역 단위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이 에너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

---

자 철회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기업의 불로소득 문제를 공략해야 한다. 급진적 그린뉴딜 역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조세 정책을 병행할 때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

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소규모 분산 자원의 거래·관리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전의 역할과 전력거래제도의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지점에서 공공 주도 에너지전환의 경로는 다소 모호하다. 공공 주도 에너지전환이 수직통합된 전력공기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분산형 자원의 연결 및 운영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구준모 외, 2023). 되돌아 보면, 에너지의 협력적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운동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였다. 에너지 자립 마을, 태양광 시민 발전소, 풍력 협동조합을 떠올려 보라. 에너지 절약, 협력적 소비-생산으로서 절전소와 네가와트(negawatt) 역시 에너지운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에너지 플랫폼의 부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의 협력적 생산-이용은 새로운 사업 모델로 포획되고 있다. ‘국민 DR’(수요반응, Demand Response) 사업은 절전소 운동보다는 데이터를 추적하여 에너지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분산 에너지의 미래를 낙관하던 이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플랫폼의 이중성이 강화되고 있다.<sup>17)</sup>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의 협력적 생산과 이용의 새로운 잠재성을 실험하는 해외 사례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플랫폼 사업 모델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전환은 사회기술적 혁신을 요구한다. 이때 ‘경쟁=혁신’, ‘독점=정체’의 도식은 단면적일 뿐더러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이병

---

17) 최근 해외 전력산업에서 추진되는 주요 디지털 프로젝트를 보면 이와 같은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재홍, 2023). 우선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의 보급과 성능 개선, 관련 투자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AMI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 분석과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상발전소 투자와 관련 기업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피크 관리와 전력망 유연성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늘면서 전력회사와 전기차 제조사, V2G(Vehicle to Grid) 기술 기업 사이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천, 2022). 관건은 개방적·참여적 혁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공기업 독점’을 혁신의 장애물로 여기는 주장에 맞서기 어렵고, 에너지 프로슈머를 앞세운 산업 활성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들의 자기파괴적인 혁신과 기존 발전자원의 조기 좌초자산화,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 송전망 확충 등이 전제돼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질문은 시장 주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이상복, 2024). 현재 커먼즈론과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에 기초한 개방적 혁신 전략은 불분명한데(이병천, 2022), 분산화된 협력적 공동 생산과 이용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18)</sup>

## 5. 나가며

에너지원을 넘어 전환 경로로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조직되고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사업 모델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아울러 전환 경로가 공방의 대상이 되면서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에서 햇빛과 바람의 독점적 이용까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대상이 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연의 선물’에서 유래하는 이익의 독점적 향유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포함된 불로소득 추출의 문제를 제기한다. 더욱이 커먼즈의 강탈·포착을 매개로 한 불로소득 추출은

---

18) 여기서 플랫폼은 사물과 정보의 순환을 촉진하는 기술과 함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Langley and Leyshon, 2017).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플랫폼 경제의 원동력과 같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이용자는 플랫폼 기업의 소유자·투자자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 규제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Rahman and Thelen, 2019). 과거 독점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것과 달리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다.

비단 재생에너지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 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초과 이익 추구, 생산적 투자·혁신이 뒤엉킨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불로스득 추출이 자본 축적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커먼즈의 강탈·포획과 불로스득 추출을 매개로 하는 일이 늘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을 진단할 때, 커먼즈의 강탈·포획을 통한 불로스득 추출을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로스득 추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에너지전환에 뛰어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은 전적으로 투자 리스크나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사하듯이, 제도 자체의 (비)합리성을 넘어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전환 정책의 성격과 효과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전환 비용의 부담과 전가, 그리고 전환 저항은 그 자체로 상당 부분 불로스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커먼즈를 개념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커먼즈에 기초한 대안적인 전환 경로가 아직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커먼즈로 포착되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면서 그 방향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먼저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 모델은 에너지 자치·분권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 에너지 커먼즈를 구성하는 가치이자 힘임을 시사한다. 사회운동의 요구로서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배타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이 언제든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이익 향유가 수용성 확보나 피해 보상을 넘어 권리 보장의 문제로 재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덧붙여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민간 금융자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협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익 향유를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것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까지 편재해 있는 공동자원의 의의를 되물으며 시민배당과 같은 대안적인 이익 공유 제도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또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부가 독점적으로 전유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산업 지원 및 연구 개발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더불어 기술혁신으로 촉발되고 있는 전력 생산·소비의 재조직화와 전력망 관리의 성격 변화는 커먼즈가 불로소득 추출의 계기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커먼즈의 잠재력은 분산 전원에 대한 기대가 플랫폼 사업 모델로 편입되는 것을 막으며 다른 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커먼즈는 다른 전환 경로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막 발을 내딛고 있는 커먼즈에 기초한 전환 경로는 앞으로 에너지 관련 자원과 함께 만들어 낸 부의 배타적 소유와 독점적 이용을 억제하고 이를 에너지 자치·분권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 재배치하는 시도들이 늘고 서로 연결되면서 구체화될 것이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구 열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회생태적 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정의 운동이 주창하는 '체제 전환(system change)'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회경제적 전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논의는 확장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역사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전환 연구와 전환 운동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커먼즈,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마주치는 곳이다.

원고접수일: 2024.04.29.

1차심사완료일: 2024.06.04.

1차수정완료일: 2024.06.17.

2차심사완료일: 2024.06.17.

게재확정일: 2024.06.17.

최종원고접수일: 2024.06.20.

**Abstract**

**(Re)making Energy Commons Against Rentierism**

Deokhwa Hong

Who owns the wind and sunlight? As the climate justice movement spreads, ownership and development models for renewable energy are emerging as new issues. The struggle for energy transition extends beyond coal phase-out, nuclear phase-ou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o encompass the transition pathwa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of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and rentier capitalism to capture the problems implicit in the transition path. To achieve this, we broaden the interpretation of energy commons, which initially focused on community energy and public commons partnerships, to include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by capital and integrat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the commons’. Furthermore, by acknowledging that one source of unearned income stems from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we examine rentier capitalism as a historical condition for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is, we examine the problem of rentierism through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implicit in energy transition policies such as renewable energy profit sharing, carbon emissions trading,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small-scal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For a just transition, we must find a way to utilize the ‘gifts of nature’ as the commons while preventing their use as a source of unearned income.

**Keywords:** commons, energy transition, carbon neutrality, rentier capitalism, just transition

## 참고문헌

- 구준모. 2023. 「전기·가스요금 폭등의 구조 진단과 대안: 기후정의와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 구준모·김종철·류민·류승민·이정팔·이지선·전주희·정은아·한재각·홍석만. 202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공공운수노조·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청소년기후행동·사회공공연구원.
- 권경락·박지혜·윤세중. 2022.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대안」. Plan 1.5.
- 권경락·박지혜·윤세중·최창민. 2023. 「1.5도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Plan 1.5.
- 권법철.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29권 3호, 13~61쪽. DOI: 10.19097/kaser.2019.29.3.13
- 권정임. 2018. 「에너지 전환과 공유사회」. 《인문사회21》, 제9권 5호, 603~618쪽. DOI: 10.22143/HSS21.9.5.43
- 김규남. 2022. “온실가스 뿜어 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한겨레》(2022.10.4).
- 김동주. 2015.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ECO》, 제19권 1호, 213~256쪽. UCI: G704-001879.2015.19.1.005
- \_\_\_\_\_. 2017.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의 개발과 풍력자원 공유화운동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명수. 2023. 「금융이 지배하는 전환? 경제의 디지털화를 향한 (한국) 국가 프로젝트와 금융」. 《경제와사회》, 제140호, 347~393쪽. DOI: 10.18207/criso.2023..140.347
- 김진철. 2024. “자원안보 특별법 드디어 통과… LNG 3자 판매 쟁점”. 《에너지타임즈》(2024.1.10).
- 김철. 2023. 「에너지 요금 인상 논란 관련 쟁점 분석: 한전 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 김현제. 2019.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네그리, 안토니오·마이클 하트. 2014.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 \_\_\_\_\_. 2020. 『어셈블리: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언』. 이승준·정유진 옮김. 알렘.
- 데 안젤리스, 맛시모. 2019.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지구적 자본』. 권법철 옮김. 갈무리.
- 라인보우, 피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갈무리.
- 리프킨, 제러미. 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안진환 옮김. 민음사.
- \_\_\_\_\_. 2020. 『글로벌 그린뉴딜』. 안진환 옮김. 민음사.
- 마추카토, 마리아나. 2020. 『가치의 모든 것: 위기의 자본주의, 가치 논의로 다시 시작하는 경제학』. 안진환 옮김. 민음사.
- 박서현. 2022. 「공공성과 공동자원: 공공성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

- 사회 연구센터의 모색]. 《탐라문화》, 제69호, 269~302쪽. DOI: 10.35221/tamla.2022..69.008
- \_\_\_\_\_. 2023. 「커먼즈의 철학으로서의 공동주의: 자기 변화의 윤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68호, 175~203쪽. DOI: 10.26839/PS68.6
- 박태현·이병천. 2016.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법학논총》, 제40권 2호, 275~304쪽. DOI: 10.17252/dlr.2016.40.2.011
- 서르니, 닉. 2020. 『플랫폼 자본주의』. 심성보 옮김. 킹콩북.
- 송준호. 2024. 「옥토퍼스 에너지, 영국 최대 에너지 공급업체 등극...3배 성장의 비결은?」. Impact On(2024.5.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94>
- 스탠딩, 가이. 2021.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안효상 옮김. 창비.
- 우양호. 2023. 「지역주민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는 가능한가?: 전남 신안군의 경험.」. 《지방정부연구》, 제27권 2호, 165~191쪽. DOI: 10.20484/klog.27.2.8
- 윤여일·최현. 2023. 「21세기 한국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와 과제: 공동체 공동자원과 공동 공동자원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제5호, 45~77쪽. DOI: 10.52955/JCCF.2023.03.5.45
- 윤영광. 2022a. 「네그리의 공동주의와 공통적인 것.」. 《법한철학》, 제104권 1호, 213~248쪽. DOI: 10.22932/pkps.2022.104.1.213
- \_\_\_\_\_. 2022b.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커먼즈론: 자본의 커뮤니티즘이라는 역설의 문제화.」. 《시대와 철학》, 제33권 3호, 101~138쪽. DOI: 10.32432/KOPHIL.33.3.4
- 이강욱. 2023. 「신안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발전사업 사례 분석.」.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4296>.
- 이병천. 2018.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 세가지 시선.」. 《시민과세계》, 제33호, 239~262쪽. DOI: 10.35548/cw.2018.12.33.239
- \_\_\_\_\_. 2022. 「불로소득 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피케티에서 크리스토퍼스로.」. 《시민과세계》, 제40호, 231~255쪽. DOI: 10.35548/cw.2022.06.40.231
- 이상복. 2024. 「공공재생에너지란 파랑새는 없다.」. 《이투뉴스》(2024.4.6).
- 이상엽 외. 2020.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용. 2023. 「LNG로 빨대 꽂은 민간 발전사... 전력시장 맹점 개선해야.」. 《이뉴스투데이》(2023.7.11).
- 이정필·한재카. 2014. 「영국에너지전환에서의공동체에너지와에너지시티즌십의 함의.」. 《ECO》, 제18권 1호, 73~112쪽. UCI: G704-001879.2014.18.1.005
- 이재홍. 2023. 「최근 전력산업 디지털 프로젝트 동향 및 트렌드. 글로벌 에너지 동향.」. 한전 경영연구원.
- 이호근. 2023. 『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 휴앤스토리.

- 장훈교. 2022. 『공동자원체제』. 부크크.
- 전중익. 2020.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2호, 47~92쪽. DOI: 10.22850/slj.2020.61.2.47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제20권 1호, 399~442쪽. UCI : G704-001879.2016.20.1.011
- \_\_\_\_\_. 2019. 「커먼즈론에 입각한 사회변동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접근」. 최현 외. 『공동자원의 영역들』. 진인진.
- \_\_\_\_\_.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237~260쪽. DOI: 10.21740/jas.2020.11.23.4.237
- \_\_\_\_\_. 2022.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ECO》, 제26권 1호, 93~139쪽. DOI: 10.22734/ECO.26.1.202206.003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 2024.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 보도자료(2024.3.30).
- 지주형. 2022.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와사회》, 제133호, 39~107쪽. DOI: 10.18207/criso.2022..133.39
- 최병두. 2009.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제6권 1호, 10~55쪽. DOI: 10.26587/marx.6.1.200902.001
- 최현. 2019. 「공동자원론으로 본 제주개발사」. 최현 외 편저. 『공동자원의 영역들』. 진인진.
- \_\_\_\_\_. 2024. 『제주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 진인진.
- 최호·변상근. 2023. “한전, ‘직접 PPA’ 요금제 도입 무기한 유예… 산업계 반발에 보완 검토”. 《전자신문》(2023.7.10).
- 한디디. 2024. 『커먼즈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삶의 주권 탈환하기』. 빨간소금.
- 한재각. 2023. 「재생에너지 분야 이익공유제의 현황과 과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 \_\_\_\_\_. 2024. 「불평등한 기후위기, 공공재생에너지로 대응하자」.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자료집.
- 홍덕화. 2017. 「수출주의 축적체제에서의 생태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환경적 조정전략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27권 2호, 185~225쪽. DOI: 10.19097/kaser.2017.27.2.185
- \_\_\_\_\_. 2019.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ECO》, 제23권 1호, 75~105쪽. DOI: 10.22734/ECO.23.1.201906.003
- \_\_\_\_\_. 2021.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협력의 방향 탐색: 발전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제44호, 59~96쪽. DOI: 10.31008/MV.44.2
- \_\_\_\_\_. 2022. 「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ECO》, 제26권 1호, 179~219쪽. DOI: 10.22734/ECO.26.1.202206.005
- 황진태. 2022. 「기존 법제를 활용한 도시 커먼즈 생산의 가능성: 서울의 한 아파트 에너지 전환 실험

을 사례로」.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도시 커먼즈》. 한국법제연구원.

- Bigger, P. and J. Dempsey. 2018. "Reflecting on Neoliberal Natures: An Exchange." *Environment and Planning E: Nature and Space*, Vol.1, No.1-2. pp.25~75. <https://doi.org/10.1177/2514848618776864>
- Christophers, B. 2020. *Rentier Capitalism: 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Verso.
- Christophers, B. 2024. *The Price is Wrong: Why Capitalism Won't Save the Planet*. Verso.
- Dardot, P. and C. Laval. Matthew Maclellan (translation). 2019. *Commons on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Bloomsbury.
- De Angelis, M. 2017.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Zed.
- De Angelis, M. and D. Harvie. 2014. "The Commons." M. Parker, G. Cheney, V. Forunier, and C. Land(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Alternative Organizations*. Routledge.
- Federici, S. 2019.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PM Press.
- Felli, R. 2014. "On Climate Rent." *Historical Materialism*, Vol.22, No.3-4. pp.251~280. DOI: <https://doi.org/10.1163/1569206X-12341368>
- Hughes, D. M. 2021. *Who Owns the Wind?: Climate Crisis and the Hope of Renewable Energy*. Verso.
- Karakilic, E. 2022. "Rentierism and the Commons: A Critical Contribution to Brett Christophers' Rentier Capitalism." *EPA: Economy and Space*, Vol.54, No.2. pp.422~429. <https://doi.org/10.1177/0308518X211062233>
- Langley, P. and A. Leyshon. 2017. "Platform Capitalism: The Intermediation and Capitalisation of Digital Economic Circulation." *Finance and Society*, Vol.3, No.1. pp.11~31. doi:10.2218/finsoc.v3i1.1936
- Mezzadra, S. and B. Neilson. 2017. "On the Multiple Frontiers of Extraction: Excavating Contemporary Capitalism." *Cultural Studies*, Vol.31, no.2-3. pp.185~204. <https://doi.org/10.1080/09502386.2017.1303425>
- Rahman, S. and K. Thelen. 2019. "The Rise of the Platform Business Model and the Transformation of Twenty-First-Century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Vol.47, No.2. pp.177~204. <https://doi.org/10.1177/0032329219838932>
- Sadowski, J. 2020. "The Internet of Landlords: Digital Platforms and New Mechanisms

of Rentier Capitalism.” *Antipode*, Vol.52, No.2. pp.562~580. <https://doi.org/10.1111/anti.12595>

Sayer, A. 2023. “Rentiership, Improperly and Moral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Vol.55, No.6. pp.1471~1484. <https://doi.org/10.1177/0308518X20908287>

Wade, R. and G. Ellis. 2022. “Reclaiming the Windy Commons: Landownership, Wind Rights, and the Assetization of Renewable Resources.” *energies*, Vol.15, No.10. 3744; <https://doi.org/10.3390/en15103744>